■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
	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
	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
	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
	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
	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
	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
	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간이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물분무등소화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차고 · 주차장에 스프
비	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재인 목조건축물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
	·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7.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

	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
	다.
8. 비상경보설비 또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는 단독경보형 감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지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9. 자동화재탐지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
用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
	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0. 화재알림설비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1.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
	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
	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자동화재속보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
用	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3.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
	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15.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
	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10 12 - 10 2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6. 상수도소화용수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실비 	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
I	

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 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 된다. 17.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4 제5 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 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 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 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4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 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8.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 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 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 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 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 19. 연결살수설비 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
	가 면제된다.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
	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
	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0. 무선통신보조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
日	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
	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
	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21.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
	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
	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에서 설치가 면제된다.